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11호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첩업무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방첩담당관의 임무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첩담당관의 업무 구체화 및 보완(안 제4조)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방첩담당관 업무에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 연도별 방첩시행계획 수립·시행, 방첩 관련 자체 규정 제정·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

나. 외국인 접촉 신고체계 간소화 및 서식개선(안 제5조, 별지 서식 등)

외국인 접촉시 사전 신청 및 결과 보고하던 절차를 접촉 후 신고로 단일화하고, 방첩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인 근무자에 대한 방첩 관리 방안 마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방첩담당관이 소속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 및 방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무자가 규정 위반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건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우) 30103
- 전자우편 : chash2011@korea.kr
- 팩스 : 044-201-55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전화 044-201-33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